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2가단138697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장

원 고 A

피 고 1. ○○○○

2. ○○○○시 ○○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
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
3. ○○○○시 ○○구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3. 4. 20.

판 결 선 고 2023. 5. 1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2013. 9. 10. 선고되고 2014. 10. 17.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사무관 등은 소외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인의 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0년경 D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7000호로 약정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, 2011. 4. 27. 위 법원으로부터 "피고 D은 원고에게 97,3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5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11. 5. 27. 확정되었다[1].

나. D은 ○○ ○○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5층 F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를 G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5. 31. C 명의로 2001. 5. 24.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고 한다), 2001. 9. 25.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.

다. 2006. 2. 3.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친동생인 H 명의로 2006. 2. 1.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2년경 C과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3. 9. 10. "이

1) 원고는 2020년경에도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12779호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 소송을 제기하여, 위 법원으로부터 2021. 3. 12. "피고(D)는 원고(A)에게 97,3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5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D과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, 따라서 원고가 D 등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"고 판단하여 "피고 C은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"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고 한다), 2014. 10. 17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[2].

마. 원고는 2020년경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280호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, 위 법원은 2021. 9. 14. "피고(G 주식회사)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9. 2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바. 2022. 7. 6.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280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가, 같은 날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.

사. 2022. 7.경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는데, 불허가되었다.

아. 한편,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6. C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, 2019. 10. 11. C 명의 가등기의 소유권이

2)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사건에서 "피고 C은 G 주식회사에게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H은 G 주식회사에게 2006. 2. 3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"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H만 항소하였는데,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3053호 사건에서 "제1심 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"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,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217938 사건에서 2014. 10. 15.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전청구권압류(처분청 : ○○세무서), 2018. 10. 2. 압류(처분청 : ○○세무서), 2019. 1. 31. 압류(처분청 : ○○세무서), 2020. 3. 24. 압류(처분청 : ○○세무서)의 각 등기를 마쳤다.

자.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2019. 4. 19. 압류등기를,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2021. 12. 15.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 내용

원고는 2013. 9. 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 사건에서 "피고 C은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"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, 2014. 10. 17.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,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,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.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,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 내용

1)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내용

D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C 명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'부동산 실명법'이라고 한다)에 따라 무효이고,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C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C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,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고,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)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의 주장 내용

가) D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C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,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C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C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,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결국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, 따라서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)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D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인데,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판결을 받았고, D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, 원고와 D은 물권적청구권자가 아니고, 이 사건 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압류 등기를 마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친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3)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의 주장 내용

가) D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C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,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C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C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,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결국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유효하고, 따라서 피고 ○○○○시 ○○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)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판결확정 이후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는데, 이 사건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살피건대,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2001. 5. 31.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, 2001. 9. 25.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, 그 후 D의 채권자인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07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이 2013. 9. 10. "이 사건 부동산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D과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, 따라서 원고가 D 등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"고 판단하여 "피고 C은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. 5. 31.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1. 9. 25.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"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. 10. 17.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C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,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2001. 5. 31.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01. 9. 25.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로 된다(동법 제4조 제2항).

나. 그러나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"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"고 규정하고 있고, 여기서의 "제3자"라 함은,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,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, 제3자의 선의·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), 이 사건의 경우 C 명의로 2001. 5. 31.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01. 9. 25.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후에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8. 11. 6.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, 2019. 10. 11.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, 2018. 10. 2. 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, 2019. 1. 31. 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, 2020. 3. 24. 압류(처분청 : ◯◯세무서) 등기를 각 마쳤고, 피고 ◯◯◯◯시 ◯◯구는 2019. 4. 19. 압류등기를, 피고 ◯◯◯◯시 ◯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8-08

◯구는 2021. 12. 15. 압류등기를 각 마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C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C 명의로 2001. 5. 31.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01. 9. 25.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,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C에게 있음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, 그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그 명의신탁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,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.

다.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,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따라서 '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어야 함'을 전제로 하여 '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승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'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◯◯◯